#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9

발의연월일: 2020. 6. 10.

발 의 자:권명호·김희국·윤영석

김도읍 • 정점식 • 정운천

이종성 · 최승재 · 유창현

구자근 · 송언석 · 김기현

임이자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대규모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고용위기지역과 지역침체가 감지되는 지역에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으며, 특히 울산 동구를 비롯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지역경제의 붕괴, 일자리 감소, 생계부담 증가 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주민들의 지방세

일부를 경감하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고용안정과 경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에서"를 "조 및 제75조의4에서"로 한다.

제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4(위기지역 내 주민에 대한 감면) 위기지역에서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주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주민세 중 균등분 및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말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기지역 내 주민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등에 대한 감면) ①
호의 지역(이하 이 <u>조에서</u> "위	
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	<u> 조의4에서</u>
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	
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	
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	
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1년 12	
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	
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	
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4(위기지역 내 주민에 대한 감면) 위기지역에서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주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주민세 중 균등분 및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말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